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
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, 재건축진단의 면제·완화를 적용하는 특별정비에 정구역의 유형 및 요건을 구체화하며, 과도한 구역 분할 방지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, 완화된 재건축진단 실시절차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

아울러,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국가유산청장

제13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교육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산업통상부·기후에너지환경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중소벤처기업부·문화재청”을 “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교육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산업통상부·기후에너지환경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중소벤처기업부·국가유산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“토지등소유자별”을 “토지등소유자 유형별”로 한다.

제1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

7조제2호의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

제27조제1호 중 “법 제30조제2항”을 “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

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”으로, “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
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·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
은 조 제1항제4호·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”을 “공공기여하는 것
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하거나, 하나의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된 특별
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
여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30조제2항”을 “둘 이상의 주
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
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주택단지를 함께 정비하는 특별
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”으로, “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
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·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
은 조 제1항제4호·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”을 “공공기여하는”으
로 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) ① 시장·군수등은 제27조제1
호에 해당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
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
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
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제2항(제2호 및 제6호에 한정한다)부터 제7
항까지, 제1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
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”는 “제16조에 따라 특별정

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”로, “정비예정구역”은 “특별정비예정구역”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8조제4 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급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 다.	제7조(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 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12. 문화재청장</u>	<u>12. 국가유산청장</u>
13. (생략)	1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)	제13조(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)
①·② (생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.
1. <u>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 신부·교육부·국방부·행정 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산 업통상부·기후에너지환경부 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· 해양수산부·중소벤처기업부 ·문화재청 및 산림청의 고위</u>	1. <u>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 신부·교육부·국방부·행정 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산 업통상부·기후에너지환경부 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· 해양수산부·중소벤처기업부 ·국가유산청 -----</u>

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. (생략) ④ ~ ⑨ (생략) 제17조(특별정비계획의 수립)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<u>토지등소유자별</u>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 제18조(특별정비구역의 분할, 통합 및 결합) 시장·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·통합·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1.·2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7조(특별정비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토지등소유자 유형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8조(특별정비구역의 분할, 통합 및 결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</u>
---	---

3. (생략)

제27조(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) 시장·군수등은 특별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(이하 “재건축진단”이라 한다)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·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·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: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완화된

구역이 제27조제2호의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27조(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) -----

-----.

1.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--- 공공기여하는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하거나, 하나의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하는 -----

기준을 적용한다.

2.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·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·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: 재건축진단을 면제한다.

<신 설>

-----.

2.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주택단지를 함께 정비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--- 공공기여하는 -----

--.

제27조의2(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) ① 시장·군수등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제2항(제2호 및 제6호에 한정한다)부터 제7항까지, 제1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14조에

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
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
에”는 “제16조에 따라 특별정비
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
지정을 제안하기 전에”로, “정
비예정구역”은 “특별정비예정
구역”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
한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
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
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
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
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24